

서울고등법원 2024. 7. 24 선고 2023나203410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4. 7. 24 선고 2023나2034102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7. 12 선고 2021가합522503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일

피고, 항소인 1. 주식회사 B

2. C 주식회사

피고 2 보조참가인 1. N조합

2. O조합

3. P조합

피고 2 및 피고 2 보조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수인

변론 종결 2024. 6. 12.

판결 선고 2024. 7. 24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7. 12. 선고 2021가합522503 판결

주문

1. 제1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,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

각하한다.

2.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한다.

3.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9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7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피고들 사이에 2018. 1. 3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을 1,076,143,83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,076,143,8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6면 2행의 "제기하였다" 다음에 "(이하 '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'이라 한다)"를 추가하고, 같은 면 6행의 "이 이 사건"을 "이 사건"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"1. 인정사실"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2. 피고 C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

가. 항변의 요지

원고는 2018. 4. 20.경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처분대금 정산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, 2019. 8. 28.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받았으므로, 적어도 위 2018. 4. 20. 또는 2019. 8. 28.경 무렵에는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,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21. 3. 31. 제기되었으므로,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.

나. 판단

1)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에 있어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'취소원인을 안 날'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,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(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다23857판결 등 참조).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,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(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2000다3262 판결, 2012. 4. 26. 선고 2011다109692판결 등 참조).

2) 갑 제7호증, 을나 제6,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,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을 받은 2019. 8. 28. 무렵에는 피고 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호텔에 관하여 피고 C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았음이 인정되고, 피고 B의 재산상황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의 경위, 원고가 취한 각종 조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피고 B의 사해의사에 대해서도 그 무렵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.

가)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2018. 4. 20.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06955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B를 채무자로, 피고 C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처분대금 정산금 채권에 관한

채권압류 및 추심명령(이하 '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'이라 한다)을 받았으므로, 이때 이미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.

나) 원고는 2018. 7.경 피고 B의 대표자 L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가 있는 상황임에도 위 채무가 완납된 것처럼 원고 명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책임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호텔에 관하여 피고 C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L 등을 고소하였다.

다)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였던 W은 2019. 5. 8. 위 고소로 진행된 형사사건(인천지방법원 2018고단9485)에서, 위 고소의 경위에 관하여 '현재 신탁이 되어 있어 신탁된 상태에서 아무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 사문서위조건을 가지고 사해신탁을 걸고 나서 민사를 넣어도 늦지 않으니 그렇게 절차를 하자고 했다.'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,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경위에 관하여 '신탁 회사에 넘어간 것을 확인하고 제기하였다. 신탁을 먼저 넘겨 놓고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니까 공정증서 받은 것으로 먼저 걸었다'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, 이를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나 위 고소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, 즉 사해행위의 존재 사실 및 피고 B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인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.

라)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, 피고 B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카불100722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였고, 위 법원은 2019. 8. 28.

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하였는바, 늦어도 이 무렵에는 사해행위의 존재사실 뿐만 아니라 피고 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.

3) 이에 대하여 원고는,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에 관하여 피고 B가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,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이 확정된 2022. 6.

18.이므로 그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되고,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,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법률적 의미에 관해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,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'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'이고, 원고는 이미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

공정증서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. 따라서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된다고 볼 수 없고, 그렇게 볼 만한 근거도 없다.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지위 및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,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한 경위를 살펴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사실 및 피고 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4)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라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2019. 8. 28.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. 3. 31.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.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,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.

3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피고 B가 2017. 1. 6. 원고에게 590,000,000원을 지연손해금을 연 15%로 정하여 2017. 7. 5.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59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7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,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김관용

판사박선영

판사김세종

별지